

2009. 1.13(화) 석간(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과 장	김 제 락
서 기 관	이 재 준

T E L : 2110-7380
 E-MAIL : leejin@molab.go.kr
 FAX : 503-9743

- ▶ 2009. 1.13. 배포
- ▶ 총 19 쪽 (사진 없음)

‘채불임금 걱정없는 따뜻한 설……!’
노동부, 설 전 채불임금 청산지도활동 집중전개
= 생계비 대부 이자율 인하 등 생활안정지원 강화 =

- 노동부는 설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불예방과 발생한 채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 대비 채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하였다.
- 이 대책에 따르면 설 전 3주간(1.5~1.23)을 『채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1.12.부터 전국 1,2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설전 채불상황에 대비한다.
 - 이 기간동안 지방노동관서에 『채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을 운영하고,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팀과 연계하여 임금채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노동부는 설전 자금난 해소지원, 물품 납품대금 및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의 설 전 지급지도 등 관계부처에도 협조를 요청

하였다.

- 또한, 발주처 또는 원청업체가 근로자들의 출입이 잦은 공사현장에 기성현황판을 설치하여 기성대금 지급예정상황을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지도하고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 등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채불임금 예방과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노동부는 채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09년 예산 2068억원)
 - 재직 중인 1개월 이상의 채불근로자에 대한 700만원까지의 **생계비대부 이자율**을 **현행 3.4%에서 2.4%로 낮추어 설전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09년 예산 200억원)
- 또한 '09년부터는 실직가정에 가구당 600만원까지 자금을 저리 대부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09년 예산 270억원)과
 - 신규실업자에 대한 “**신규실업자훈련생계비대부**”제도를 새로 시행(09년 예산 240억원)하고,
 - 기존의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지원(09년 예산320억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불예방과 **채불임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08년도 한해동안 발생한 채불임금은 242천명 9,266억원으로

'07년에 비하여 17.6%가 늘어났고, '08.12.31.현재 처리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445억원이며

- 체불발생내역은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의 34.0%,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6.7%로 각각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건설업의 체불임금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5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체당금지급액 증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도산 및 체당금 신청단계부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 사후에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와 더불어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 금액에 비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체불임금 관련 권리구제에 대하여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350),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에 문의.

첨부 : 1. 설 대비 체불근로자보호대책 내용 1부

2. '08년 체불임금 관련통계 1부. 끝

09년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2009. 1.

노 동 부

- 목 차 -

1. 체불임금 발생 및 해결현황1

2.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 대책2

 □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2

 □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적극지도2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3

 □ 임금채권 확보 신속지원3

 □ 설전 자금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 강화4

3. 행정사항4

< 참고 1 > 관계부처 협조사항5

< 참고 2 > 체불임금관련 통계6

< 참고 3 > 도산기업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7

< 참고 4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8

< 참고 5 >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9

< 참고 6 >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10

1. 체불임금 발생 및 해결 현황

□ 체불임금 발생

- '08년도에 발생한 신규체불임금은 242천명 **9,266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체불근로자수 33.1%, 체불액 17.6%증가
 - ▶ 1인당 체불액은 382만원으로 전년 동기(432만원) 보다 11.6%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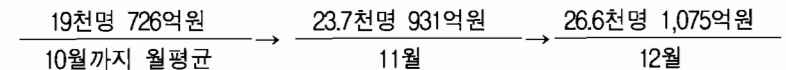
□ 지도해결 실적

- 전년도 이월액 295억원을 포함 전체 체불임금 **9,561억 원** (249천명)중 **54.1%**인 5,171억원(155천명)은 지방관서에서 **지도해결** 41.3%인 3,945억원(85천명)은 사법처리 ※ 445억원은 청산지도 중임

〈 임금체불발생 및 처리 현황 〉 (단위 : 천 명, 억원, 전년이월 포함)

구 분	체불발생액 ('08.1.1.~12.31)	처 리			청산지도중 (12.31. 현재)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건 수	169,490	162,602	109,746	52,856	6,888
근로자 수	249,485	239,651	155,391	84,260	9,834
금 액	9,561	9,116	5,171	3,945	445

- 경기악화가 계속되면서 **임금체불**이 '08년 11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설전후로 더 가속화** 될 전망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및 임금채권 확보 지원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1,881억 원** 지급 (2,135개사 44,121명)
- **채직중인**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5,492명 250억원)
-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임금채권확보** 및 민사절차 지원 (52천명, 소가 2,581억원)

2.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 대책

□ 설전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09. 1. 5~1.23)』 운영

-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에 전국 근로감독 행정력 집중
 - 1주 사전 지도 후 2주간 비상근무 및 현장 활동 강화

□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적극지도

○ 전국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 기간 : '09. 1. 12. ~ 1.23.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2인 1조
-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청산지원전담반」 운영
 - 전담반은 집단체불 등 상황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통해 신속한 해결 지원
 - 전담반은 체불임금청산지원팀(27개 기관)을 활용하고, 체불청산지원팀 미운영기관은 전담반을 별도 구성
- 고액 체불임금 규모별 전담관리체계 유지 및 관리 강화
 - ※ 10억원 이상 지방관서장(본부보고), 1억원 이상 담당과장 관리

○ 임금체불 취약업종 및 지역 집중관리

- 신고사건 다발업체, 하도급 건설공사 등 체불 가능성이 많은 취약업종 및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지도기간 중 상시관리
 - ※ 노동시장 위기관리 TF팀 활동과 적극 연계
- 건설 하도급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08.1월부터 시행된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을 통해 신속 해결
 - ※ 건설업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중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

- 발주기관 또는 원청업체가 현장에 기성 현황판을 설치하여 하도급 근로자들이 기성금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지도

○ 고의·상습 악성체불 사업주 엄중 사법처리

- 집단체불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재산은닉 등 악성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사법처리 (검찰과 협조)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신속 지급

-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 하고, 사실상 도산여부와 체불액을 신속히 조사·확인
- 사실상 도산인정 시 설 전에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 '09년 체당금 예산 2,068억원 확보 (전년 대비 9.5% 증액)

○ 재직중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 안내

-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1개월이상) 발생시 근로 복지공단을 통한 생계비 대부 안내
 - ▶ 현행 3.4% → 2.4%로 인하 실천시행 ('09년도 예산 200억원)

○ '09년부터는 실직가정에 가구당 600만원까지 자금을 저리 대 부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09년 예산 270억원)과

-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신규실업자에 대한 “신규실업자 훈련생계비대부”제도를 새로 시행('09년 예산 240억원)하고,
- 기존의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지원('09년 예산320억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

□ 임금채권 확보 및 민사절차 신속 지원

-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 적극 활용
 - 재산도피 우려, 사업주청산의지 부족 등 자율해결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
 - 대한법률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한 임금채권 확보 등 신속한 민사절차 지원 ▶ '09년 예산 42천명 71억원 확보

□ 설 전 자금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 강화

- 본부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중소기업청), 하도급 및 물품 납품 대금(지식경제부), 건설공사·하도급대금(국토해양부) 등 설 전 조기지급 협조 요청 ※ 관계부처 협조사항 : 붙임1
- 지방관서
 - 지역내 자치단체, 발주처, 원도급업체, 대기업 등에 공사 및 납품대금 조기집행 지도 및 협조 요청
 - ※ 사업주 간담회, 협조공문 발송 등

3. 행정사항

- 홍보활동
 - 본부 : 전광판 홍보
 - 지방 : 기 송부한 “체불임금해결을 도와 드립니다”를 공공장소에 배부('08. 11. 298,000부 중 잔여자료 활용) ※ 부족시 추가요청
- 비상근무시 관리사항
 - 체불임금 현황, 고액체불사업장 체불상황, 비상근무자 명단 및 근로감독관 연락망

참 고 1

관계부처 협조 사항

관련 부처	협 조 사 항	비 고
법 무 부 대 검 찰 청	○ 체불 후 도주,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 엄정조치 ○ 대한법률구조공단 : 임금체불 관련 무료 법률구조 신속 지원	
행정안전부	○ 건설공사·납품대금 등을 적기 지급 지도 - 지방·교육 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도	
지식경제부	○ 기업의 하도급대금 및 물품납품대금 등의 신속지급 지도 - 산업단지에 대금 신속지급 및 임금우선지급 안내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지원 - 금융권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협조요청 - 주요공단·업종별 사업주단체를 통해 임금신속지급 촉구	
국토해양부	○ 발주처 원청자 등에게 건설공사·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지도 ○ 공사대금 지급일시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발주처·원도급자 등에게 지도하여 공사대금이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유도	
공정 거 래 위 원 회	○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 관련단체·사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지도	
금융위원회	○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	
조 달 청	○ 정부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납품대금 조기지급 - 예산범위 내에서 선금상한액 지급	
경 찰 청	○ 체불관련 지명 수배·통보 피의자 신속검거	
국 세 청	○ 임금체불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 신속 협조 -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	

참고 2 체불임금 관련 통계자료

□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근로자 수	181	109	155	301	292	277	195	249
금 액	8,897	3,461	5,211	10,426	10,291	10,297	8,403	9,561

- 주) '04년부터 체불근로자 1인 이상 집계('03년까지는 5인 이상), 전년도 이월액 포함
 ※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시행에 따라 '07년의 체불확정액이 실제보다 감소
 ▶ '08년도 신규체불액은 9,266억원(98천개소 242천명)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

□ 임금체불신고 및 처리 현황

○ 사건 접수 및 처리

(단위 : 개소, 명, 억원)

구 분	항 목	신 고			처 리			처리중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08.12월	사업장수	100,155	97,790	3,556	97,455	76,658	25,497	4,089
	건 수	169,490	164,064	5,426	162,602	109,746	52,856	6,888
	누계	249,485	242,478	7,007	239,651	155,391	84,260	9,834
	체불금액	9,561	9,266	29,496	9,116	5,171	3,945	445
'07.12월	사업장수	92,293	88,840	5,870	89,881	65,791	28,738	5,369
	건 수	151,802	145,429	6,373	146,362	90,831	55,531	5,440
	누계	194,831	182,133	12,698	187,772	106,446	81,326	7,059
	체불금액	8,403	7,879	524	8,107	3,627	4,480	296

※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체불액이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

○ 임금내역별·업종별·규모별·체불임금내역('08년신규발생분)

내역별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	-
	57.3%	37.4%	5.3%	1인당 382만원
업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등	운수창고 등
	34.0%	14.0%	7.8%	7.6%
규모별	5인 미만	30인 미만	100인 미만	100인 이상
	23.9%	66.0%	86.7%	13.3%

※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은 6,971명 169억원(1.8%) ※ 1인당 249만원

참고 3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 제도개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는 제도 ※ 국가가 체불사업주에게 대위권 행사

□ '09년 사업예산 : 2,068억원

- '98~'08년까지 지급액 11,742억원 중 5,055억원을 회수(회수율43.1%)

※ 연도별 지급액 : 161억원('98.7'12) → 704('01) → 1,220('03) → 1,602('05) → 1,608('06) → 1,499('07) → 1,881('08)

□ 사업내용

- 지급요건 :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 ※ 재판상도산 : 파산신고·회생절차개시결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 사실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도산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근로자)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최고 1,560만원까지 지급)
 - ※ 월정상한액 (임금·퇴직금) : 30세미만 150만원, 30~40세 미만 240만원, 40~50세미만260만원, 50세이상 210만원
- 절차 : 지방노동관서에 청구(도산일 2년 이내) → 지방노동관서 사실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 재원 등

- 관리주관 : 노동부(근로조건지도과)
 - 임금채권보장기금 : 근거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 주요재원 :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의 0.4/1,000 징수
 - 주요사업 : 체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등

참 고 4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사업 (23천명, 1,030억)

(단위 : 명, 억원)

사업명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09 계획	
		인원	금액
① 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가동중인 사업장소속으로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 지원 : 체불임금 한도 내에서 1인당 700만원, 연리 3.4%,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실전 2.4%로 인하 시행 ○ 보증요건 : 보증·담보없이 대부가능(신용보증지원, 보증료는 연 1.0%) ※ 제외 : 신용불량거래자, 만 60세 이상인 자 ○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우리은행에서 대부 ○ 재원 및 관리 : 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운용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진흥기금, 주요재원 : 융자원금회수, 이자수입, 이월금, 복권기금전입금 	4,000	200
②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가족 부양책임이 있는 자로서 3개월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연소득 2,400만원 미만자 ○ 지원 : 가구당 600만원 한도, 연리 3.4%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보증요건, 대부절차 는 ①과 같음 ○ 재원 및 관리 : 관리주관 : 노동부, 운용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진흥기금, 주요재원 : 공적자금 차입금 	9,000	270
③ 재직자 생활안정자금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 ○ 지원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각 700만원(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 한도, 연리 3.4%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보증요건, 대부절차 는 ①과 같음 ○ 재원 및 관리 : 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운용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진흥기금, 주요재원 : 융자원금회수, 이자수입, 이월금, 복권기금전입금 	4,566	320
④ 신규 실업자훈련생계비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신규실업자 ○ 지원 : 1인당 600만원 한도, 연리 2.4%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보증요건, 대부절차 는 ①과 같음 ○ 재원 및 관리 : 관리주관 : 노동부, 운용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진흥기금, 주요재원 : 공적자금 차입금 	6,000	240

참 고 5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 사업 개요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

□ '09년 사업예산 : 71억원

□ 사업내용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무료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사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절차 : 진정사건 접수(근로자) ⇒ 체불금품 조사(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정 및 청산지시(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신청(근로자) ⇒ 발급(근로감독관) ⇒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신청(근로자) ⇒ 무료법률구조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 재 원 등

- 사업시행주체 :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부
 - 임금채권보장기금 : 근거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 주요재원 :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의 0.4/1,000 징수
 - 주요사업 : 체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등

참 고 6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 사업 개요

○ 임금채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직접 수령하는 제도 ※ 국세기본법 제53조 참고

○ 제도 운영의 필요성

-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근로자의 채권을 보호할 필요

○ 이용효과

- 근로자가 사업주를 통하여 지급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애로기업의 사정(압류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

○ 이용절차

- 국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사업주)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
 ※ 요구서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날인
 - 사업주(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작성) → 소관세무서제출 → 세무서 확인 → 근로자에게 지급

'08년 체불임금 발생 및 처리 현황

<'09.1.5 근로조건지도과>

□ 체불임금 발생 및 해결 현황

◆ '08년(1.1~12.31) 발생 신규체불임금은 242천명 9,2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체불근로자수 33.1%, 체불액 17.6% 증가
 ※ 1인당 체불액은 382만원으로 전년동기(432만원)보다 11.6% 적음

○ 전년도 이월액 295억원을 포함한 '08년 12월말 현재 전체 체불임금은 249,485명 9,561억원임

- 이중 5,171억원(109,746건, 155,391명)은 지도해결(67.5%)하고, 3,945억원(52,856건, 84,260명)은 사법처리(32.5%)하였으며
 ※ 지도해결율(해결건수/처리건수) : '07년 → '08년(62.1%→67.5%)

- 미처리 445억원(6,888건, 9,834명)에 대하여 해결지도 중임

< 임금채불 신고·처리 현황 >

(단위 : 개소, 건, 명, 억원)

연월	구분	신 고			처 리			처리중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08년	사업장수	100,155	97,790	3,556	97,455	76,658	25,497	4,089
	건 수	169,490	164,064	5,426	162,602	109,746	52,856	6,888
	근로자수	249,485	242,478	7,007	239,651	155,391	84,260	9,834
	체불금액	9,561	9,266	295	9,116	5,171	3,945	445
'07년	사업장수	92,293	88,840	5,870	89,881	65,791	28,738	3,569
	건 수	151,802	145,429	6,373	146,362	90,831	55,531	5,440
	근로자수	194,831	182,133	12,698	187,772	106,446	81,326	7,059
	체불금액	8,403	7,879	5,236	8,107	3,627	4,480	296

□ 금품종류별

○ 전체 체불액 중 임금 57.3%, 퇴직금은 37.4%, 기타금품은 5.3%를 차지

※ '07년 전체 체불액 중 임금 59.2%, 퇴직금 34.4%, 기타금품 6.4%

□ 지역별

- 체불액은 서울·강원(36.8%), 인천·경기(27.1%), 부산·경남(11.6%) 순이고
- 체불근로자수도 서울·강원(34.1%), 인천·경기(25.3%), 부산·경남(13.8%) 순임
- ※ 체불액 및 체불근로자수가 많은 순은 전년 동기와 같음

□ 업종별

- 체불액은 제조업(34.0%), 건설업(14.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7.6%) 순이고
- 체불근로자수는 제조업(25.1%), 건설업(11.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9.4%),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7.0%) 순임
- ※ 전년 동기 체불액 및 체불근로자수가 많은 순은 제조업, 건설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규모별

- 체불액의 66.0%가 3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86.7%는 100인미만 사업장)
- 체불근로자수의 경우 75.9%가 3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90.8%는 100인미만 사업장)
- ※ '07년 : 체불액의 64.9%(체불근로자의 80.2%)가 30인 미만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 '08년 발생 체불액은 7천명 16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체불근로자수는 214.5%, 체불액 176.8% 증가
- ※ 1인당 체불액은 249만원으로 전년동기(283만원)보다 12.0% 적음
- 전년도 이월액 1억원을 포함한 '08년 12월말 현재 전체 체불임금은 6,849명 170억원임
- 이중 91억원(2,516건, 4,017명)은 지도해결(63.7%)하고, 71억원(1,447건, 2,526명)은 사법처리(36.3%)하였으며
- ※ 지도해결률 (해결건수/처리건수) : '07년 → '08년(58.7%→63.7%)
- 미처리 8억원(198건, 306명)에 대하여 해결지도 중임

□ 생활안정 및 권리구제 지원

- '08.12월말 현재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44,121명에게 체당금 1,881억원 지급, 재직근로자 5,492명에게 생계비 250억원 대부
- 체불근로자 51,698명에 대하여 소송가액 2,581억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민사본안 소송 등 무료법률구조지원

〈 금품종류별 신고·처리 현황 〉 (단위 : 건 명, 억 원)

구 분	항 목	신 고	처 리			처리중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08년	전 체	건 수	169,490	162,602	1079,746	52,856	6,888
		근로자수	249,485	239,651	155,391	84,260	9,834
		체불금액	9,561	9,116	5,171	3,945	445
	임 금	건 수	120,386	115,339	72,057	43,282	5,047
		근로자수	181,833	174,376	106,122	68,254	7,457
		체불금액	5,491	5,222	2,679	2,543	269
	퇴직금	건 수	41,145	39,555	31,199	8,356	1,590
		근로자수	56,298	54,287	40,560	13,727	2,011
		체불금액	3,563	3,411	2,207	1,204	152
	기 타	건 수	7,959	7,708	6,490	1,218	251
		근로자수	11,354	10,988	8,709	2,279	366
		체불금액	507	483	285	198	24
'07년	전 체	건 수	151,802	146,362	90,831	55,531	5,440
		근로자수	194,831	187,772	106,446	81,326	7,059
		체불금액	8,403	8,107	3,627	4,480	296
	임 금	건 수	110,602	106,439	59,976	46,463	4,163
		근로자수	143,341	137,752	71,207	66,545	5,589
		체불금액	4,988	4,806	1,884	2,922	182
	퇴직금	건 수	34,337	33,210	25,299	7,911	1,127
		근로자수	43,043	41,743	29,003	12,740	1,300
		체불금액	2,897	2,795	1,524	1,271	102
	기 타	건 수	6,863	6,713	5,556	1,157	150
		근로자수	8,447	8,277	6,236	2,041	170
		체불금액	518	506	219	287	12

'08년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 현황

□ 총괄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원)

구분	신고			처리			처리중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사업장수	100,155	97,790	3,556	97,455	76,658	25,497	4,089	
건수	169,490	164,064	5,426	162,602	109,746	52,856	6,888	
근로자수	249,485	242,478	7,007	239,651	155,391	84,260	9,834	
체불금액	956,057	926,562	29,496	911,605	517,070	394,535	44,453	
금품 종류 별	임금	549,069	530,881	18,188	522,185	267,887	254,299	26,884
	퇴직금	356,320	346,192	10,129	341,145	220,696	120,448	15,176
	기타	50,668	49,489	1,179	48,275	28,486	19,788	2,393

□ 국적별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원)

국적	구분	신고			처리			처리중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전체	사업장수	100,155	97,790	3,556	97,455	76,658	25,497	4,089
	건수	169,490	164,064	5,426	162,602	109,746	52,856	6,888
	근로자수	249,485	242,478	7,007	239,651	155,391	84,260	9,834
	체불금액	956,057	926,562	29,496	911,605	517,070	394,535	44,453
내국인	사업장수	98,513	96,152	3,535	95,872	75,435	25,011	3,998
	건수	166,147	160,750	5,397	159,408	107,650	51,758	6,739
	근로자수	242,636	235,687	6,949	233,108	151,374	81,734	9,528
외국인	체불금액	939,021	909,666	29,355	895,374	507,941	387,433	43,647
	사업장수	3,269	3,241	34	3,127	2,095	1,085	158
	건수	4,181	4,143	38	3,983	2,536	1,447	198
외국인	근로자수	6,849	6,791	58	6,543	4,017	2,526	306
	체불금액	17,037	16,896	141	16,231	9,129	7,102	806

□ 지역별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원)

지역별	구분	신고			처리			처리중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총계	사업장수	100,155	97,790	3,556	97,455	76,658	25,497	4,089
	건수	169,490	164,064	5,426	162,602	109,746	52,856	6,888
	근로자수	249,485	242,478	7,007	239,651	155,391	84,260	9,834
	체불금액	956,057	926,562	29,496	911,605	517,070	394,535	44,453
서울· 강원	사업장수	34,635	33,391	1,779	33,334	25,029	9,943	1,911
	건수	64,988	61,941	3,047	61,676	37,460	24,216	3,312
	근로자수	86,655	82,689	3,966	82,151	48,024	34,127	4,504
부산· 경남	체불금액	356,009	340,748	15,262	336,774	173,332	163,442	19,235
	사업장수	15,056	14,884	263	14,872	12,349	3,149	295
	건수	22,101	21,752	349	21,673	16,375	5,298	428
대구· 경북	근로자수	33,816	33,440	376	33,183	24,302	8,881	633
	체불금액	109,510	107,901	1,609	106,199	65,326	40,873	3,311
	사업장수	8,950	8,835	186	8,825	7,011	2,254	189
인천· 경기	건수	12,774	12,557	217	12,508	8,958	3,550	266
	근로자수	21,096	20,797	299	20,673	13,596	7,077	423
	체불금액	74,108	72,760	1,348	72,430	38,913	33,517	1,678
광주· 전라· 제주	사업장수	24,464	23,963	780	23,873	18,858	6,165	900
	건수	40,451	39,407	1,044	38,824	27,068	11,756	1,627
	근로자수	62,724	61,383	1,341	60,272	39,668	20,604	2,452
대전· 충청	체불금액	258,066	251,011	7,055	245,147	142,932	102,215	12,919
	사업장수	8,800	8,620	260	8,570	6,762	2,184	329
	건수	15,323	14,942	381	14,674	10,037	4,637	649
대전· 충청	근로자수	22,766	22,261	505	21,997	14,427	7,570	769
	체불금액	71,895	69,991	1,904	69,154	42,482	26,672	2,741
	사업장수	8,901	8,710	293	8,596	7,073	1,903	466
대전· 충청	건수	13,853	13,465	388	13,247	9,848	3,399	606
	근로자수	22,428	21,908	520	21,375	15,374	6,001	1,053
	체불금액	86,469	84,151	2,317	81,900	54,084	27,816	4,569

□ 업종별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원)

업종	구분	신 고			처 리			처리중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업종전체	사업장수	100,155	97,790	3,556	97,455	76,658	25,497	4,089
	건 수	169,490	164,064	5,426	162,602	109,746	52,856	6,888
	근로자수	249,485	242,478	7,007	239,651	155,391	84,260	9,834
	채불금액	956,057	926,562	29,496	911,605	517,070	394,535	44,453
제조업	사업장수	19,764	19,353	758	19,343	16,386	4,190	804
	건 수	37,672	36,614	1,058	36,114	26,217	9,897	1,558
	근로자수	62,558	60,907	1,651	60,174	41,082	19,092	2,384
	채불금액	324,128	315,376	8,752	308,430	182,655	125,775	15,698
전기가스 및 수도업	사업장수	84	82	3	83	61	26	1
	건 수	122	116	6	121	69	52	1
	근로자수	162	156	6	161	101	60	1
	채불금액	460	446	14	456	215	241	4
건설업	사업장수	8,652	8,383	399	8,436	6,173	2,800	385
	건 수	16,018	15,456	562	15,345	9,901	5,444	673
	근로자수	29,472	28,630	842	28,100	18,082	10,018	1,372
	채불금액	133,032	129,680	3,352	127,142	80,178	46,964	5,8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업장수	12,587	12,290	411	12,271	10,249	2,451	442
	건 수	18,835	18,287	548	18,164	13,590	4,574	671
	근로자수	23,339	22,717	622	22,608	15,865	6,743	731
	채불금액	74,581	72,177	2,404	71,978	43,531	28,447	2,603
운수창고 및 통신업	사업장수	4,465	4,412	74	4,364	3,516	1,156	198
	건 수	9,268	9,109	159	8,859	5,600	3,259	409
	근로자수	14,140	13,968	172	13,667	8,105	5,562	473
	채불금액	71,371	70,344	1,027	68,276	30,285	37,990	3,095
금융보험부동산 및사업서비스업	사업장수	5,919	5,711	289	5,776	4,754	1,341	261
	건 수	12,301	11,724	577	11,850	7,669	4,181	451
	근로자수	17,625	16,996	629	17,036	10,849	6,187	589
	채불금액	57,061	53,538	3,523	54,622	29,347	25,275	2,439
기타(미등 록포함)	사업장수	49,219	47,982	1,626	47,688	35,668	13,763	2,009
	건 수	75,274	72,758	2,516	72,149	46,700	25,449	3,125
	근로자수	102,189	99,104	3,085	97,905	61,307	36,598	4,284
	채불금액	295,424	285,002	10,423	280,701	150,858	129,843	14,723

□ 규모별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원)

규모	구분	신 고			처 리			처리중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전체	사업장수	100,155	97,790	3,556	97,455	76,658	25,497	4,089
	건 수	169,490	164,064	5,426	162,602	109,746	52,856	6,888
	근로자수	249,485	242,478	7,007	239,651	155,391	84,260	9,834
	채불금액	956,057	926,562	29,496	911,605	517,070	394,535	44,453
5인 미만	사업장수	52,166	50,663	1,906	50,615	37,806	14,620	2,030
	건 수	72,958	70,431	2,527	70,157	46,396	23,761	2,801
	근로자수	91,226	88,165	3,061	87,726	56,290	31,436	3,500
	채불금액	231,231	221,876	9,355	221,248	118,355	102,893	9,983
5인~ 29인	사업장수	38,162	37,316	1,345	37,120	29,965	9,288	1,699
	건 수	67,639	65,598	2,041	64,693	44,145	20,548	2,946
	근로자수	98,693	95,988	2,705	94,268	61,723	32,545	4,425
	채불금액	402,289	389,361	12,928	382,401	226,215	156,186	19,888
30인~ 99인	사업장수	7,342	7,231	241	7,250	6,504	1,313	282
	건 수	20,573	19,858	715	19,723	13,363	6,360	850
	근로자수	37,170	36,088	1,082	35,895	23,354	12,541	1,275
	채불금액	197,119	191,881	5,239	187,241	112,795	74,446	9,878
100인~ 299인	사업장수	1,994	1,971	46	1,981	1,852	267	59
	건 수	6,238	6,153	85	6,008	4,188	1,820	230
	근로자수	15,319	15,222	97	14,751	9,850	4,901	568
	채불금액	89,872	88,745	1,127	86,306	42,129	44,177	3,566
300인~ 499인	사업장수	315	308	10	313	296	32	13
	건 수	1,354	1,334	20	1,313	1,128	185	41
	근로자수	4,296	4,276	20	4,255	2,690	1,565	41
	채불금액	20,673	20,341	332	20,234	14,510	5,723	439
500인 이상	사업장수	306	301	8	305	294	24	6
	건 수	728	690	38	708	526	182	20
	근로자수	2,781	2,739	42	2,756	1,484	1,272	25
	채불금액	14,873	14,358	515	14,174	3,064	11,110	699

□ 생활안정 및 권리구제 지원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원)

구 분	채당금 지급			생계비 대부		무료법률구조 지원		
	업체수	근로자수	금 액	근로자수	금 액	건수	근로자수	금 액
'08년	2,135	44,121	188,082	5,492	24,983	25,423	51,698	258,092
'07년	1,990	41,502	149,920	4,067	17,679	23,131	50,143	229,606

※ 무료법률구조는 민사본안 사건 기준